

[X]. 제7장(서비스 무역·설립 및 전자상거래) 및 그 부속서, 그리고 제8장(지급 및 자본이동)은 다음으로 대체된다.

[X]. 용도 지역 지구제·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는 다음으로 대체된다.

“용도 지역 지구제·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

개정 의정서 협상의 일부인 제7-가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 및 제7-나장(투자)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개정 의정서 서명 시점에서 한국과 영국 내에 적용 가능한 용도 지역 지구제, 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였다.

양 당사국은 용도 지역 지구제, 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한, 이러한 규제가 제7가.5조(시장접근) 또는 제7나.4조(시장접근)의 의미 내에서 시장접근 제한이 아니라는 양해를 공유한다.

위의 공동의 양해에 근거하여, 양 당사국은 한국이 다음의 법률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시장접근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.

-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
양 당사국은 용도 지역 지구제, 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자국의 권리를 확인한다.

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”